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시행 2017.11.10.] [국토교통부령 제464호, 2017.11.10., 일부개정]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 업무를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하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상용화에 대비하여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야간비행 등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4872호, 2017. 8. 9. 공포, 11. 10.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무인비행장치 야간비행 등의 승인절차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안 제307조제1항·제3항, 별지 제120호서식 및 별지 제121호서식)
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도록 하고, 교통안전공단은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 대상(안 제308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150미터 이상의 고도 또는 관제구역 중 관제권과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함.

다. 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기준(안 제312조의2 신설, 별지 제123호의2서식 및 별지 제123호의3서식 신설)
무인비행장치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서의 서식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신청서를 제출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 승인서를 발급하되,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464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교통부장관에게"를 "교통안전공단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제308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27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고도"란 제199조제1호나목에 따른 최저비행고도(150미터)를 말한다.

⑤ 법 제127조제3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이란 별표 23 제2호에 따른 관제구역 중 관제권과 통제구역 중 비행금지구역을 말한다.

제310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법 제127조에 따라 비행승인을 받은 경우와 다음 각 목의 행위는 제외한다.

제10장에 제312조의2 및 제31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2조의2(무인비행장치의 특별비행승인) ① 법 제129조제5항 전단에 따라 야간에 비행하거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범위에서 비행하려는 자는 별지 제123호의2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서
 5. 안전성인증서(제305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정한다)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무인비행장치 조종자의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29조제5항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한 후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의3서식의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안전의 확보 또는 인구밀집도, 사생활 침해 및 소음 발생 여부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행일시, 장소, 방법 등을 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① 법 제131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1. 산불의 진화·예방
 2. 응급환자를 위한 장치(臟器) 이송 및 구조·구급활동
 3. 산림 방제(防除)·순찰
 4. 산림보호사업을 위한 화물 수송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과 유사한 목적의 업무수행
- ② 법 제131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7에 제3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법 제129조제5항에 따라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하는 자	1만원
--	-----

별지 제120호서식 앞쪽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하고, 뒤쪽의 "국토교통부(항공종사자 전문교육기관 담당부서)"를 "교통안전공단(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담당부서)"으로 한다.

별지 제121호서식의 "국토교통부장관"을 "교통안전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123호의2 및 별지 제123호의3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초경량비행장치 전문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전문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제30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3호의 2서식]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Durations)	90일
신청인	성명/명칭	생년월일	
	주소		
비행장치	종류	형식	
	자체 무게	길이	이착륙형식
	성능	운용한계	조작방법
	신고번호	제작번호	
	안전성인증번호	제작연월일	
특별비행 계획	일시 또는 기간	구역	
	비행목적/방식	특별비행 횟수	
	경로/고도		
조종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자격번호	비행경력	

「항공안전법」 제 129조제 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12조의 2제 1항에 따라 특별비행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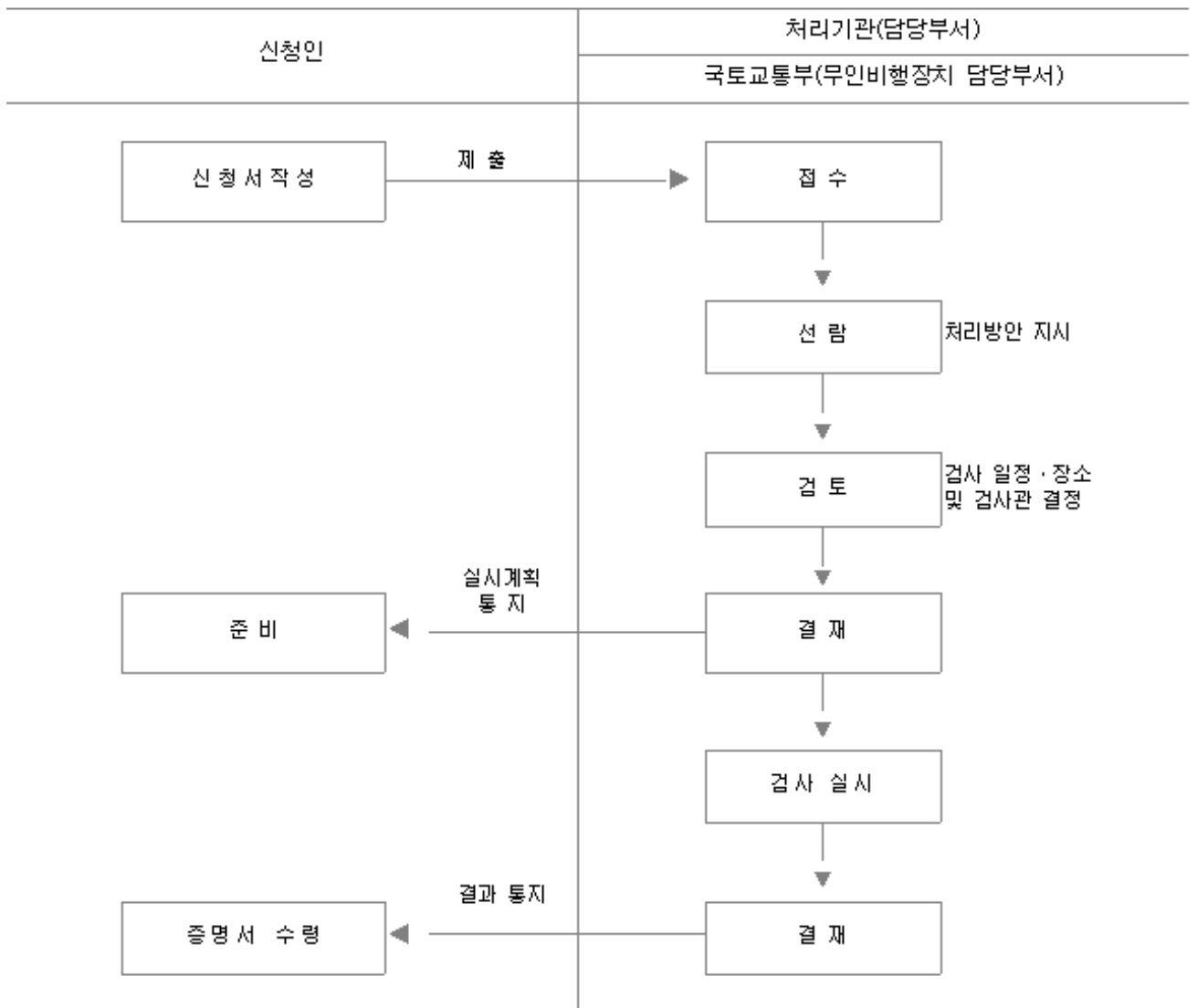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무인비행장치의 종류·형식 및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2. 무인비행장치의 성능 및 운용한계에 관한 서류 1부 3. 무인비행장치의 조작방법에 관한 서류 1부 4.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절차, 비행지역, 운영인력 등을 포함한 비행계획서 1부 5. 안전성인증서(제 305조제 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에 해당하는 무인비행장치에 한한다) 1부 6. 무인비행장치의 안전한 비행을 위한 조종 능력 및 경력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해당 무인비행장치 사고에 따른 제3자 손해 발생 시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항공사업법」 제 70조제 4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는 자로 한정한다) 8.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수수료 (Fee)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 321조에서 정한 수수료
----------------------	--	--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 123호의3서식]

대 한 민 국 국토교통부 The Republic of Kore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승인 번호 Certificate No.: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승인서 Authorization of UAV Special Flight		
1. 기관명 Organization		
2. 특별비행 책임자 Person in Charge of Special Flight		
3. 특별비행승인 기체 Authorized Unmanned Air Vehicle		
4. 특별비행승인 종류 Type of Special Flight Authorization		
5. 특별비행 일시 및 장소 Date and place of Special Flight		
6. 특별비행승인 유효기간 Valid Period of Authorization		
7. 특별비행승인 제한사항 Limitations of Special Flight Authorization		
이 승인서는 「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 무인비행장치의 비행이 무인비행장치 특별비행을 위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여 특별비행을 승인함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5, Article 129 of Aviation Safety Act and Paragraph 2, Article 310 of Enforcement Regulation of Aviation Safety Act, the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hereby certifies that the abovementioned Safety Standard Order for UAV Special Flight is in Compliance with requirements of Aviation Safety Act.		
Date of Issuance		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div style="border: 2px solid red; width: 60px; height: 60px; 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justify-content: center; margin: 0 auto;"> 직인 </div>
Minister of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본 승인서의 승인범위를 벗어난 비행 또는 안전에 우려가 있을 경우 법 제132조에 따라 승인범위 변경 또는 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If there is a risk of flight or safety beyond the scope of approval, flight may be restricted or changed the scope of flight in accordance with Article 132 of the Aviation Safety Act.		

